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별지 참조

경유

제목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1. 평소 법원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식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¹⁾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동의서를 받아 결격사유조회²⁾ 실시

■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특허)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1)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9.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각급 법원 청사 출입, 그 밖에 필요한 경우의 범죄경력조회 또는 신원조사의뢰

-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후보자들의 송달받을 주소 기재할 때 도로명주소와 5자리로 바뀐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위함)

■ 전문분야

[대분류를 선택을 하신후 세부분야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전문분야로 입력이 되며, 업무하실 때에도 전문분야에 관한 신청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건축** : 건설사업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관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기타, 건축디자인, 건축방재, 건축설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환경, 구조해석, 도시계획, 안전진단, 전산구조, 조경, 콘크리트, 화재원인, 소방방재, 건축정보통신설비, 건설기계, 건설법무, 건축안전진단, 공학, 기계, 수자원, 플랜트, 기타
- 2. 경제.기업** : 국제거래, 금융, 기업, 운송, 증권, 항공, 해무, 해운, 회계, 무역, 경제, 감정평가, 원가관리, 기타
- 3. 과학기술** : 가스, 건설기계,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기계, 디자인, 물리응용, 생명공학,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전자, 정보통신, 통신, 화학, 농약학, 농업, 해양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복구, 약학, 고분자화학, 공작기계, 바이오광학, 재료공학, 산업기계설비, 산림공학, 동물자원생명과학, 연료, 지질, 전파공학, 교통, 금속, 약기, 수의학, 부직포공학, 항공기, 식품, 전기철도시설, 전자통신, 의류, 선박, 전기안전, 기타
- 4. 부동산** : 부동산감정, 재건축·재개발, 주택관리, 감정평가, 재건축·재개발, 기타
- 5. 의료** : 가정의학과, 구강내과, 내과,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법의과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산업의학과, 성형외과, 소아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응급의학, 응급의학과, 의료과오, 의료일반, 이비인후과, 예방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과, 치과교정과, 피부과, 해부병리학과, 핵의학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소아청소년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기타
- 6. 지식재산권** : 가공기술, 금속, 기계, 기업법무, 도메인, 디자인, 반도체, 상표, 생명공학, 생물공학, 섬유, 식품, 약학, 유전공학, 의약학, 일용품, 저작권, 전기전자, 정보통신, 지

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일반, 지식재산권법, 컴퓨터, 토건, 화학, 음악, 사진저작권, 특허·실용신안, 환경관련, 기타

7. 토목 : 건설사업관리, 광물, 광해방지, 교통, 도로, 도로및공항, 도로안전시설물, 도시계획, 발파, 상하수도, 소음진동, 수자원, 수질관리, 안전진단, 암석지반, 자연재해방지, 지반공학, 지질및지반, 진동, 측량, 토목구조, 토목기타, 토목설계, 토목시공, 토목품질, 토양, 토질, 토질및기초, 하천, 건설토목분야, 토목·광업, 원자력·화력발전소 내진, 건설관리, 도로안전, 기타

8. 환경 : 대기, 먼지, 소음, 수질, 수질관리, 실내오염, 아스팔트콘크리트, 악취환경,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토양, 폐기물, 폐윤활유재활용, 해양환경, 화공, 환경관리, 환경보전, 환경복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일반, 환경호르몬, 에너지자원등, 환경, 소음진동, 생태학, 기타

9. 사회과학 : 심리학, 신문방송학, 양형조사, 사회복지, 사회과학, 사회조사, 법학, 노동, 행정, 범죄심리학, 범죄학, 기타

10. 인문 : 사학, 한국학, 종교학, 문화

* 명단 등재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전문심리위원은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등재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게 후보자 명단예의 등재 동의 확인 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안내자료,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안내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된 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후보자 추천 기한: **2020. 11. 20.(금)**

■ 추천 방법

- 공문 및 별지 추천 양식【붙임 1】과 경력카드【붙임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동의서【붙임 3】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 공문을 스캔한 후 별지 추천 양식【붙임 1】과 경력카드【붙임 2】,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동의서【붙임 3】을 작성하셔서 E-mail(jpo1@scourt.go.kr) [담당자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김소혜 행정관, 02-3480-1968]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3】양식은 위 E-mail로 요청하시면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1부.
2.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1부.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동의서 1부.
4. 공무수행안내서식 1부.
5. 수신처 1부. 끝.

법원행정처장



법원주사보 김소혜 법원사무관 정유나 법원서기관 이진학 심의관 이인수

총괄심의관 박노수 실장 전결
11/04
최수환

협조자

시행 민사지원제1심의관-5616 (2020.11.04.) 접수 ()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968 /전송 02-3476-8047 / musoyu2@scourt.go.kr / 공개

【붙임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

[illegible]

※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전 문 심 리 위 원 경 력 카 드

2020. . . 현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							tel :
	사무실							tel :
	이메일주소 :				fax : cell :			
소 속			현 기관 근무년수					
전문분야 (구체적 기재)								
자 격			자격취득 년월일		. . .			
활동 희망 지역) (2군데 이상 ○ 표시)	서울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대전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대구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광주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수원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	특허법원	
최종 학력 (졸업 · 수료 · 중퇴)								
주요 경력								
법원 감정인 경력								
주요 저서, 논문								
소송사건 당사자 경력								
형사처벌 받은 경력								
(특기사항)								

- 1) 활동 희망 지역에 ○표 하는 것은 해당 고등법원과 그 고등법원 관내 각 본원 및 지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임.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음. 단,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구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전문심리위원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주택, 사무실), 연락처(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소속, 현 기관 근무년수, 전문분야, 자격, 자격취득년월일, 활동 희망 지역, 최종학력, 법원 감정인 경력, 주요 저서·논문, 소송사건 당사자 경력, 형사처벌 받은 경력, 특기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경우 : 등재기간 만료 시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 : 즉시폐기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 위와 같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민감정보(형사처벌 받은 경력)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붙임 4】

공무수행사인 안내 서신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사법부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금지, 신고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가 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공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금지 규정, 신고 의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고, 그 공무 수행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제도에 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기관은, 각급 법원(담당공무원,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기관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입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법부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최수환 배상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안내



2020. 11.

법원행정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2020. 11.

[사법지원실]

I. 개요

1.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핵심 내용임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됨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제22조, 제23조)이 적용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2. 공무수행사인이란 누구인가요?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1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11조 제1항 제2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11조 제1항 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11조 제1항 제4호)

II.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제5조 제1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 부정청탁 대상 직무(14가지)에 관하여
-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14호까지)
- 또는 지위 · 권한을 남용 · 월권하여 행사 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

2. 부정청탁 대상 직무(제5조 제1항)

1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 형벌부과등 감경·면제	3 채용·승진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련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3.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행위 유형(제5조 제2항)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4.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제7조)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접수 기관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각급 법원의 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수행사인의 소속기관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심의·평가 등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5. 부정청탁과 관련된 제재

위반행위	행위자	제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일반인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누구든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	일반인	제재 없음
	공직자등	징계
	공무수행사인	해촉 등 가능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공직자등	징계
	공무수행사인	해촉 등 가능

III. 금품등 수수 금지

1. 금품등이란 무엇인가요? (제2조 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제8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등 수수 · 요구 · 약속에 한하여 제재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 ➡ 형사처벌
 - 위 금액 이하 금품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 ➡ 과태료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제9조)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 · 거절 의사표시 또는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
- 배우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공무수행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

4.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등	3 사적 거래(증여제외)로 인한 채무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 관련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장기·지속적 친분자가 질병 등으로 곤궁한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경조사비 중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2018.1.17. 개정)

5.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관련 제재

제재 대상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초과
①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수행사인 ② 배우자가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 ③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약속·제공 의사표시한 사람	과태료 (수수가액의 2배~5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배우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 의사표시·인도 조치한 경우, 제재 면제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제도 안내

2020. 11.

법 원 행 정 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제도 안내

2020. 11.

[사법지원실]

1. 개요

-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과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수행사인에게도 각종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규정은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접수 기관은 소관 공공기관(소속기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 접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공무수행사인 관련 신고

- 부정청탁의 신고(청탁금지법 제7조)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청탁금지법 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 :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약속.제공 의사표시되는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형사처벌 대상), 위 금액 이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약속.제공 의사표시되는 금품등(과태료 부과 대상)

- 공무수행사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약속.의사표시를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 신고 이외에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하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에 관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거부 의사표시.인도한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접수 기관

- 신고 접수 기관은, 각급 법원²⁾(담당공무원,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기관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입니다.

■ 소관 공공기관

- 담당공무원 : ○○○(전화 ***-***-****)³⁾
-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전화 ***-***-****)⁴⁾
-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 ○○○(전화 ***-***-****)⁵⁾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02-3480-1796, 3143)

※ 신고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명단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2) '소관 공공기관'에는 해당 공무수행사인 소관 소속기관을 '○○지법(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3) 해당 공무수행사인 소관 공공기관 또는 부과의 공무수행사인 담당공무원 기재(ex. 총무과 사무관 ○○○)

4) 해당 공공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 기재(ex. 기획법관 ○○○, 감사담당관 ○○○)

5) 해당 공무수행사인 소관 소속기관의 기관장 기재(ex. 각 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